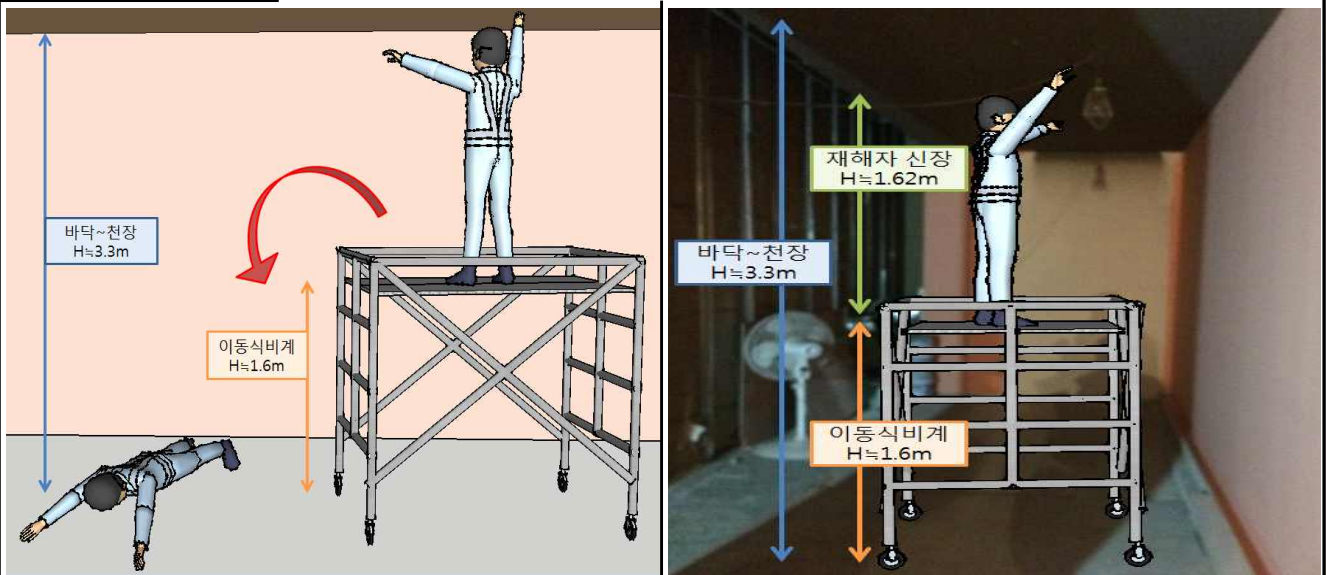


이동식 비계 위 작업 중 추락

재해 개요

2017.11.23(목) 13:30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○○인테리어 ○○음식점 도장공사 현장에서 재해자(도장공, 만 67세)가 이동식비계 위에서 실내 벽면 및 천정 도장 작업을 위한 퍼티 작업 중, 약 1.6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, 요양 치료 중 2017.12.08(금) 사망한 재해임

재해 관련사진



[사진] 재해발생 상황도

재해발생원인

○ 이동식비계 설치 상태 불량

- 이동식비계의 최상부 작업발판 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정 기준에 맞게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,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해 추락사고 발생
- 이동식비계의 바퀴를 브레이크로 미고정 및 아웃트리거를 미설치함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유동으로 인해 추락사고 발생

○ 안전모 미지급 및 미착용

-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미지급하였고,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보호받지 못함

재해예방대책

○ 이동식비계 설치 시 조립기준 준수

- 이동식비계의 최상부 작업발판 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추락에 대비하여 기준에 맞는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
- 이동식비계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·췌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 설치

○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준수

-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실시